

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」

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

의 안 번 호	436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5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지원부서 2개팀(종합운동장)과 사업부서 3개팀(행복주택 관리사무실)으로 분리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,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창군종합운동장 내 육상기록실(현 평창유산재단 사무실)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추가 사무실로 무상사용하고자 함.
- 이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치 : 평창읍 종부로 69-27(종부리 596-3), 평창종합운동장
- 나. 사용기관 : 평창군 시설관리공단
- 다. 사용목적 :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활용
- 라. 사용기간 : 2025. 8. ~ 2030. 7. (5년간)

※ 평창올림픽플라자 준공(평창유산재단 사무실 이전)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

- 마. 재산내역

재산의 표시					비 고
소재지	지번	구분	지목/구조	면적(m ²)	
평창읍 종부리	596-3	건물	철근콘크리트	101.08	현 평창유산재단 사무실 (육상기록실)

3. 위치도 및 현장사진

< 위치도 >



< 현장사진 >

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~ 3. 생략
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(사용료 감면)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① ~④ 생략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 ~ 2의2. 생략
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4. ~ 5. 생략